

지방의회 소속 공직자 교육 프로그램의 방향과 내용

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김태영

①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 장기교육 프로그램 설계 배경

- 2020년 「지방자치법」 전부개정의 핵심 내용 중 하나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 강화에 관한 것임
 - 지방행정을 지방자치로 오해한 결과 그 동안 과도하게 집행부 중심 자치를 실시해 온 것도 상당 부분 사실임
 - 주민과 지방의회는 자치의 대상이 아니라 자치의 주체이며, 최근의 「지방자치법」 전부 개정도 이와 같은 기형적인 지방자치를 일정 부분 조정하자는 취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
-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는 기관구성의 다양성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으며, 이는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전면적인 조정을 염두에 둔 것임
 - 자치선진국에서처럼 지방의회 중심 기관통합형이 일부 지역에서라도 채택된다면 더 이상 집행부 중심이 아닌 지방의회 중심 지방자치가 가능하다는 것임
 -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에 대한 인사권을 기준 단체장에서 지방의회 의장으로 넘기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며, 이는 「지방공무원법」(제6, 7조, 제30조의 2, 제32, 39조 등)과 「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」(제3조 등)의 개정을 통하여 뒷받침됨
 - 지방의회는 집행부와 별도로 자체 인사위원회를 두어 독립적으로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됨
- 지방의회 인사권독립과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다양성 등이 협용됨에 따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의 변화가 예견되며, 그 결과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의 내용과 방식도 달라져야 할 것임
 - 집행부 소속 공직자와 의결기관 소속 공직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은 원칙적으로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일정 부분 달라야 할 부분도 있음
 -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체계적인 정기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 교육기관이 없는 것으로 파악됨(국회의정센터의 중기 교육 프로그램은 제한적임)
 - 이 글은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는 한 축으로서 지방의회에 속한 공직자들이 특별히 갖추어야 할 역량을 염두에 두고 각종 교육기관은 그들에게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지에 관해 대략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

② 현황 및 교육프로그램 설계 방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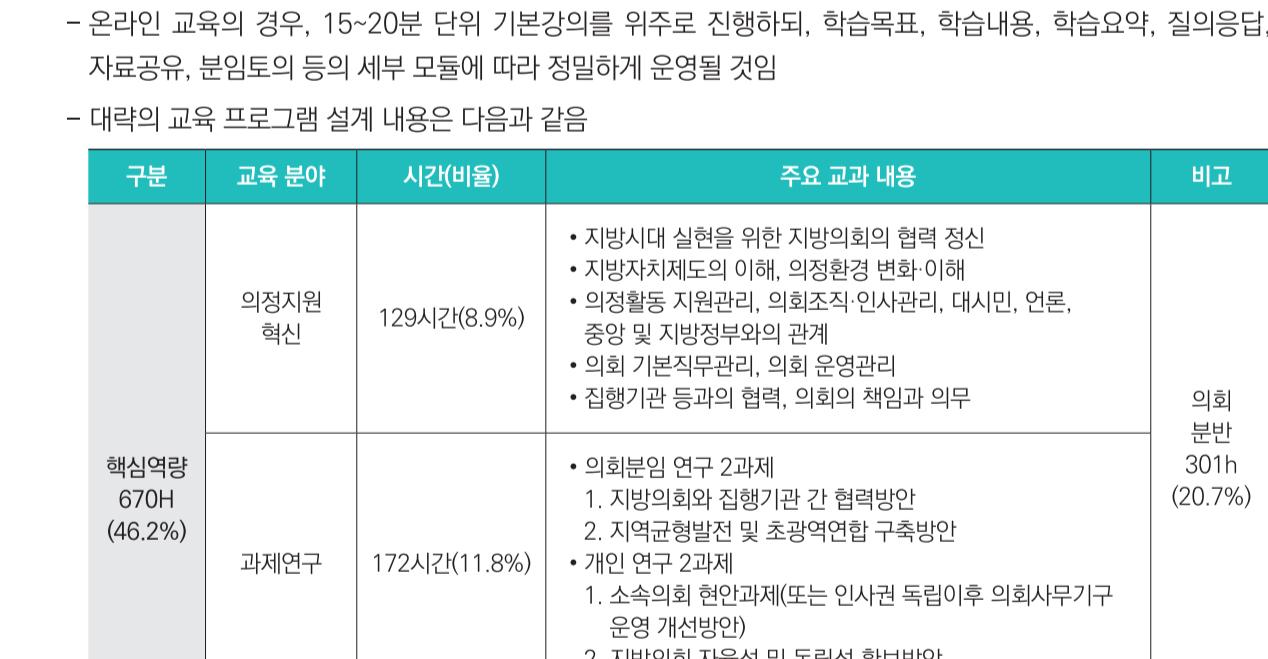
- 우선 의결기관으로서의 지방의회의 특성에 부합한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할 것인데, 전술된 바와 같이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장기교육 프로그램은 없음
- 집행기관과 의결기관의 교과서적 구분이 아니라 결정과 집행이 분리되지만 하나의 기구(법인)안에서 자치가 이루어진다는 논리와 철학에 기초해서 교육 프로그램이 설계되어야 할 것임
- 이론적으로 따지면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들이 집행부 소속 공직자들에 비하여 우위에 위치함. 따라서 헌법 가치에 대한 학습이 특별히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며 리더십 교육에 대한 특별 프로그램 운영은 더욱 중요함
- 교육 대상은 원칙적으로 4급~5급에 해당되지만 전체 공직자가 대상이 될 수 있음

구분	의회사무처장	의회사무국장	의회사무과장	과장 또는 담당관
시·도	서울특별시	1급 일반직 지방공무원		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
	부산광역시	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		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
	그 밖의 광역시·특별자치시 및 도	2급 일반직 지방공무원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		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
시·군·구		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	5급 일반직 지방공무원	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- 교육 프로그램 설계의 기본방향은 리더십 교육을 강화한다는 것임
 - 이를 기초로 세부적인 기본 실무 교육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
 -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할당되는 시간의 비중은 리더십 교육, 실무교육이 대략 3:7 정도 배정되는 것이 적절함
 - 7월에 해당되는 실무 교육에는 조례, 행정사무감사, 예산 결산 심사, 지방인사제도, 여론 수렴, 의정활동 지원 프로그램 등이 포함됨
 - 따라서 리더십 교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고 할 수 있으며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의 과정으로 분리되어 운영될 수도 있음
 - 실무과정에는 정부회계, 전산 교육 등도 포함되며, 특히 회의 진행, 상임위 운영 등 지방의회 운영 전반에 관한 실무교육도 포함되며, 전반적인 대략의 설계 방향은 다음과 같음

〈그림 11〉 중점 추진방향



③ 대안 및 저언 : 교육프로그램 세부 내용 제언

- 첫째, 헌법 일반에 관한 심도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임
 - 단순 상위법으로서의 헌법에 관한 교육이 아니고, 민주사회에서 헌법정신과 관련된 심도 있는 철학에 대한 학습이 필요함
 - 이를 위해 각종 사례들이 활용되며, 기본 강의뿐만 아니라 토론과 실습 등이 수반될 것임. 예컨대, 효율성의 가치를 제고한다는 관점에서 해당 사례를 접한 공직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를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될 것임
 - 한편 형평이라는 가치를 증진시킨다는 관점에서 특정 사례 관련 공직자들은 어떤 포지션을 취해야 할 것인지를 갖게 될 것임
 - 기타 윤리성, 합리성 등 다양한 보편가치들을 기준으로 실제 상황에 적합한 공직자들이 취해야 할 태도나 입장 등과 관련된 학습을 하게 될 것이며, 이를 위한 풍부한 사례들이 활용되어야 할 것임(5~6주 배정)
- 둘째,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와 조례 실무에 관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함
 - 헌법가치에 대한 이해는 공직가치와 함께 기본 소양에 해당되며, 자치법규에 대한 이해는 기본 직무역량에 해당되므로 심도 있는 자치법규 관련 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함
 - 최근 개정된 「지방자치법」을 위시하여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 등 다양한 종류의 관련 법령 등에 대하여 학습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임(2~3주 배정)
- 셋째, 리더십과 정책결정에 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함
 - 리더십의 경우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 역량이며 학습 효과가 크지 않은 분야가 리더십 교육이라고 하지만 올바른 리더십을 이해하고 증진하는데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은 존재함
 - 행정학, 경영학, 심리학, 정치학, 역사학 등 다양한 분야의 학문들을 융합하여 리더십에 대한 이해 증진 노력이 필요하며 이는 정책결정과정을 이해하고 실제 정책을 만드는데 있어서 실무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때 중요한 역량임
 -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 대한 이해와 정책이 결정되는 과정과 진행되는 과정을 정밀하게 이해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할 것임
 - 정책평가에 대한 이해는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들에게는 특히 더 중요하며 협의의 정책평가는 특정 프로그램이나 특정 정책의 결과에 대하여 실적평가와 성과평가는 수행하는 것을 지칭함
 - 평가를 통하여 한류가 발생하게 되고, 공직자들은 한류 기법을 익히고 더 나은 정책을 만드는데 도움을 받을 것이며 넓은 의미에서 정책평가는 집행부가 수행하는 일체의 행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함
 - 예산과 결산에 대한 평가는 정책평가에 해당되며 이를 위하여 정부회계를 학습하는 것도 중요함
 - 행정사무감사 역시 광의의 정책평가에 해당될 수 있으며 행정사무감사의 핵심은 집행부가 단순히 기관 운영에만 관심을 기울였는지, 아니면 기관이 수행해야 할 임무를 통하여 주민의 삶이 개선되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살피는 것임(11~12주 배정)
- 넷째, 지방의회 운영 일반에 관하여 학습할 기회를 가져야 할 것임
 - 통상적인 관료제의 기본 원칙에 충실한 집행부의 운영 원칙과 상당 부분 다른 조직운영 방식을 학습할 필요가 있음
 - 회의 소집과 운영, 상임위 운영 방식 등을 포함하여 여론 수렴 절차와 기법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역량을 증진 시켜야 할 것임
 - 정책지원관의 활용과 관련된 학습도 별도로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정책지원관의 역할과 활용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하고 이들의 적절한 배치에 대한 학습도 필요함
 - 전문위원의 역할에 대한 이해와 활용 방식에 대한 교육훈련도 필요함
 - 전문위원의 경우 지방의회의 최고 멘토 집단이며 전문위원의 활용 수준 정도에 따라 지방의회의 역량이 결정될 수도 있고 의정활동 관련 정밀한 활용법에 대한 전문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할 것임(4~5주 배정)
- 다섯째, 조례, 예산·결산 실무 등에 관한 학습임
 - 조례의 제정, 개정 등과 관련된 실무교육은 필수불가결하며 예산, 결산 관련 주가 학습의 기회도 가져야 할 것임
 - 특히 정부회계론, 지방재정론 등에 대한 학습은 해당 분야에서의 경쟁력을 증진시킬 것임
 - 조례, 예산, 결산 등에 대한 학습은 본 과정의 핵심이며, 시간 배정도 최소한 각각 4~5주 정도어야 하고 모든 과정은 토론과 실무 연습을 병행하여 진행될 것임(8~10주 배정)
- 여섯째, 지방인사제도에 대한 별도의 학습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할 것임
 - 이는 원칙적으로 집행부 소속 공직자들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중복됨
 - 다만, 지방인사제도에 대한 학습을 기반으로 의결기관의 조직 특수성을 감안한 효율적인 인사제도의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임
 - 추후 의회직렬에 대한 논의의 공간과 지방의회 간 인사교류제도 등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를 위해서도 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이 내용은 2~3주 정도 배정될 것임(2~3주 배정)
- 일곱째, 여론수렴 방식과 절차, 그리고 대국민 홍보 등을 위한 특별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함
 - 기초 통계 과목을 이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, 이는 단기 요약 과정을 통하여 해결될 수 있음
 - 기타 미디어, 커뮤니케이션 이론 학습 등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대외적 경쟁력을 증진시킬 수 있으며 지방의회 소속 공직자들의 경우 특별히 여론, 미디어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학습 과정을 수립해야 할 것임
 - 지방의회는 디지털 플랫폼으로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며, 시민을 대리하여 다양한 의견과 여론을 수집하고 전파하고 반영하여 좋은 의사결정을 해야 하기 때문임(3~4주 배정)
- 여덟째, 교육방식의 획기적 변화를 추구해야 할 것임
 - 본 과정은 원칙적으로 집합교육의 형식을 취하지만 온라인 방식도 병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임
 - 집합교육의 경우 매주 분임토의 시간이 배정되고, 개별과제 및 분임과제를 추진하여 교육의 효과를 배증시킬 것임
 - 온라인 교육의 경우, 15~20분 단위 기본강의를 위주로 진행하되, 학습목표, 학습내용, 학습요약, 질의응답, 자료공유, 분임토의 등의 세부 모듈에 따라 정밀하게 운영될 것임
 - 모든 과정과 개별과목들은 이론 강의와 병행하여 토의, 실무 교육으로 진행될 것이며 특히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과정은 별도의 특화된 방식으로 설계될 필요가 있음
 - 좋은 교육 프로그램은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고 성숙된 지방자치는 주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지역과 국가 경쟁력을 증진시킬 것임

* 2024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※ 주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[별표 4]

내용문의 김태영(경희대학교 행정학과 교수, tykim@khu.ac.kr)

분야	세부 분야	시간(비율)	구분	주요 교과 내용	비고

<tbl_r cells="6" ix="3" maxcspan="1" maxrspan="1" usedcols